

1. 개정이유

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등에 따라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별표5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지방항공청장은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) 공항의 여객처리능력(여객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한 처리능력을 말한다)에 비하여 전년도의 공항시설 이용실적이 30 퍼센트 이하인 공항 중 공항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경우
- 2)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항공운송 여건의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사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3)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별표 5 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항공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